
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
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823호

나. 발 의 자 : 임만균 의원(찬성의원 9명)

다. 발의일자 : 2019년 8월 6일

라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
2. 제안이유
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이 제명을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
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의 제명 변경
사항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일괄 반영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종전의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이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
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으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(안 제2조).

나. 종전의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이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으로 제명이 변경된
사항을 반영함(안 제3조)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조례안의 개요

-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명칭이 변경된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등의 제명 변경 사항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일괄 반영하고자 제안되었음.

나.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

- 정부는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을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명칭 변경하였음(2016.1.6.).
- 또한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,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제명을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서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으로 변경한 바 있음(2013.5.22.).
- 이에 조례안은 이들 법률의 제명 변경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「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공공투자 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일괄 정비하고 있음.
- 조례의 일괄정비는 관련법령 제·개정사항의 미반영, 용어의 정비,

떠어쓰기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에게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적시성·적합성,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.

〈 일괄정비 조례안의 주요 내용 〉

연번	조례명	조항	개정내용
1	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	제3조제4항	홍보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⇒ 홍보물이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		제6조제1항 제4호	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」 ⇒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2	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	제2조제2호	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1조 ⇒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1조

- 다만, 일괄정비는 자구수정이나 제명 변경이 필요한 다수의 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방식이므로, 일괄정비를 통해 단 2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입법정비 효과가 크지 않아 개별조례의 개정시 반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.
- 또한, 「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서 인용된 종전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1조는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번호가 제47조로 변경되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도 시행령 제81조로 변경되어 이를 수정 반영해야 함.

〈 수정의견 〉

일괄정비안	수 정 의 견
<p>제3조(「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2호 중 “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1조”를 “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1조”로 한다.</p>	<p>제3조(「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2호 중 “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1조”를 “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47조”로 하고, “같은 법 시행령 제57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81조”로 한다.</p>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최 범 준	02-2180-8058